



서울산업진흥원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**서울무역전시장(SETEC) 운영규정 개정(안)**

서울무역전시장(SETEC)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'SETEC 전시장 운영규정'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아 래 -

가. 개정목적

- 현 규정개정(2015.8)이후 전시시설 및 운영환경 변화 등 반영 필요
- 서울시 공공전시장으로서의 안전관리 및 전시배정 등 공익적 역할 강화
- 불필요한 조항 삭제, 용어 정리, 서식 표준화 등 전반적인 운영규정 점검 및 보완

나. 주요내용

| 해당조항 | 개정내용 | 개정사유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제6조 | 사용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조항 추가 |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람객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 | 보완 |
| 제10조 | 관람객 출입 통제 조항 추가 |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용적정인원 초과할 경우 관람객 출입 통제 필요 | 보완 |
| 제12조 | 전시 배정기준 세분화 | 신규 전시 유치 및 공익적 전시 개최 확대를 위해 전시배정 기준 조정 | 보완 |
| 제18조 | 전시 감면기준 확대 | 다양한 공익전시회 육성을 위해 감면범위 확대 | 보완 |
| 제40조 | 안전대책계획서 제출 의무화 |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안전대책계획서 및 서약서 제출 의무화 | 보완 |
| 제47조 | 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| 정시모집 제도가 안정화됨에 따라 전시 배정에 관한 주요 사항 의결 등 운영위원회 역할 구체화 | 보완 |
| 제51조 | 의무실 운영 조항 신설 | 관람객 안전을 위해 필요시 의무실 운영 조항 신설 | 신설 |

※ 기타 용어 정리 및 서식 표준화 조항 등 일반사항은 신규대조표 참조

다. 추진절차 : 서울시 승인요청 후 규정 시행

- 붙임 1. 서울무역전시장(SETEC) 운영규정 개정안 1부
2. 신규대조표 1부. 끝.

★담당

강민지

팀장

김대환

본부장

전결 02/21
문구선

협조자

시행 SETEC운영팀-286 (2018.02.21.) 접수 ()

우 121-904 서울특별시

/ 홈페이지

전화 02)2187-4603 /전송 02)

/ 이메일 minjikang@sba.seoul.kr

/ 공개